

# 定 款

태하종합건설 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당 회사는 “태하종합건설 주식회사”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주택건설업
1. 부동산컨설팅업
1. 부동산매매알선업
1. 조경공사업
1. 기타부대사업일체

제 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당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조 (광고방법) 당회사의 광고는 경기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기일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한다.

제 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⑥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당회사는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 (명의개서 등)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1.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2.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상속, 증여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전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예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식의 양도) 1.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17조 (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상실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함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한 주권의 재교부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당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20조 (사채모집) 1. 당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2.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제21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등),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제25조 (소집시기) 1.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26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총회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제38조 (이사의 원수) 당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가 2인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3.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4.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6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50조 (상당역 및 고문) 1. 당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당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감 사

제51조 (감사) 1.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2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53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54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에 준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 제 7 장 계 산

제57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 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영업보고서

2. 감사는 전조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이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제6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1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작성한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년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태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영업보고서

2. 감사는 전조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이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제6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1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작성한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년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